

난 민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 이유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난민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난민조사관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난민조사관 임명에 관한 투명성과 이의신청 사실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 신설 및 해임·해촉 사유 추가(안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12조의2)

난민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조력인으로서 심의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회피 의무를 위반한 난민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난민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의신청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 신설(안 제12조의4)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출석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 대상자에게 통
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출석 대상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라. 난민조사관 자격 명시(안 제12조의5)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중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난민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난민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
인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난민조사
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난
민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 하였던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조력인(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이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 하였던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가 요청하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4(의견 청구)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

의 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5(난민조사관의 자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난민조사관(이하 “난민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난민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난민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④ ~ ⑥ (생략) <u><신 설></u>	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u>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 1.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u> <u>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단체 또는</u> <u>법률사무소가</u> <u>이의신청인의</u> <u>대리인 또는 조력인(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사</u> <u>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u>

<신 설>

경우

2. 위원이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가 요청하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신 설>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4(의견 청취)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

<신 설>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5(난민조사관의 자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난민조사관(이하 “난민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난민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난민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